

# 2019년 ‘설 명절 청렴주의보’ 발령

<2019. 1. 7. / 감사실>

## ■ ‘청렴주의보’란?

- 명절, 휴가철, 선거 등 취약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부패·청렴 위해요소를 직원들에게 사전 주의·당부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을 도모

○ 발령내용 : ‘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 선물 등 수수’ 금지

○ 발령기간 : 2019. 1. 9. ~ 2. 8.

○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(시행령 제17조)

구 분	가액범위
음식물 :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	3만원
선물 :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	5만원 (농수산물 및 가공품10만원)
경조사비 : 축의금,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 하는 화환조화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	5만원 (화환·조화 10만원)

○ 제재대상 금품수수시 제재

-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 시 과태료 2배~5배부과 대상  
※ 직무와 관련없는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
-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

○ 금품 등 수수시 대응조치

-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와 함께 지체없이 신고

※ 관련사항 문의 또는 상담은 감사실(02-2157-1082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